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단24729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강경식, 김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윤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이찬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연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준형, 차현환

변론 종결 2020. 1. 16.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2. 13.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급한 하남시 D 소재 카페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17. 2. 18. ~ 2017. 3. 29.(현장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 가능)

○ 총 공사금액 : 105,000,000원

계약금 25%, 1차 중도금 25%, 2차 중도금 25%, 잔금 25% : 공사완료 후

○ 특약사항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서대로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갑(피고)가 확인 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은 점주에게 받아서 지급한다. 만약 갑이 점주에게 받지 못하

였을 경우 지급날짜는 상호 협의한다.

도급계약 세부조건

제11조(대금지급)

1 갑이 을(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도급인(실매장주)로부터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만약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을도 또한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1 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3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지체일수 × 총공사금액의 1/100으로 정한다.

단, 갑의 요청 또는 도급인(실매장주)에 의해 지체된 일수는 제외한다.

나. 피고는 2017. 2. 22.부터 2017. 3.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78,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계약 추가금 5,000,000원, 공사(목공사, 잡철공사 등) 추가금 18,854,000원, 소방공사추가금 6,090,000원, 전기공사 추가금 4,855,000원] 합계 34,799,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26,250,000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 추가공사대금 34,799,000원의 합계 61,0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공사 중에 이를 협의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사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였거나 보수하기 위해합계 33,361,298원이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33,361,2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경과하여 2017. 4. 2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5일간의 지체상금 2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세부조건 제11조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 자체는 확정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지급 시기는 정하여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는 점, ② 공사대금은 통상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는 2017. 4.경 완성되었고, 소장이 송달된 2018. 9. 4.까지도 1년 이상 경과한 점, ③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총공사대금 160,000,000원 중 잔금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장 송달일 무렵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는 소장 송달로 기한이 도래함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추가공사비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지체상금청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17. 3. 29.이고, 지체상금률이 1/100인 사실, 이 사건 공사가 2017.

4. 25.경 완공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6,250,000원(= 105,000,000 × 0.01 ×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지체상금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위 산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625,000원(= 26,250,000원 × 0.1)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250,000원에서 지체상금 2,625,000원을 공제한 23,625,000원(공사완료일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확정된 기한의 도래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완료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은빈